

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

「하수도법」 제20조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『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』 추진을 위하여 기술진단 집행계획 및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11일

코리아엔텍(주)

1. 기술진단 집행계획

가. 용역명 : 『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』

나. 시행기관 : 코리아엔텍(주)

다. 용역사업의 주요내용

1) 대상시설

- 보성 공공하수처리시설(3,000톤/일)

- 보성 분뇨처리시설(100톤/일)

2) 과업내용

-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

-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(시설진단, 운영진단, 공정진단)

-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방안

- 성과보고서 제출

3)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90일간

라. 용역비 : 금109,470,000원 (부가세 포함)

※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(환경부 고시 제2014-143호) 고시금액 적용

2. 기술진단용역참가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
- 나. 「하수도법」 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
- 다. 단독 또는 공동(공동이행방식) 참여가 가능하며, 공동참여는 2개사 이내로 허용.

3.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4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

- 가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

- 1) 제출기한 : 2015. 12. 18.(금) 09:00 ~ 18:00
- 2) 참가등록 및 제출처 :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, KnK 디지털타워 1308호
- 3)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접수 (우편, 인터넷, 이메일 접수 불가)
- 4) 제출서류 : 기타서류 평가서 참조
 - 참가등록서류
 -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(원본 포함)
 - 사업수행계획서 5부

- 나. 진단기관 선정 : 2015. 12월 22일(화)(우리 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)

5.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본 용역의 기술 진단비는 환경부 고시 제2014-143호(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)에 의한 고시금액으로 정하는바 본 용역의 업체 결정에 있어서 진단금액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.
- 나. 「하수도법」 제20조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91호와 우리사에서 정한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.
- 다.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라. 고득점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의 사업수행계획 항목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하고, 평가기준의 사업수행계획 항목의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.

6. 기타사항

- 가.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습니다.
- 나.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(공동도급사 각각)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,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다.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라.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메일 발송 자료를 열람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마.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조건,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- 바.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.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“원본 대조필” 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.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아. 기한 내 평가서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자.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차.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엔텍(주)(02-2655-9971~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